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6.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의 이용료, 전용 사용료 및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체육센터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안 제5조)
- 나.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안 제7조)
- 다. 사용허가, 취소, 제한에 관한 조항(안 제12조, 제13조)
- 라. 사용료 징수, 반환, 감면에 관한 조항 (안 제14조 ~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함.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함.
3.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함.
4. “성인”이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5.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6.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구미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 보급 및 시민 체력향상
2.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관련 비영리 단체나 구미시설공단(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④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사용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센터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다.

1.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사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가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2. 음주, 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흥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체육

센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체육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징수된 사용료는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센터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체육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들성생활체육센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 (들성생태공원 내)	
2	강동국민체육센터	구미시 인의동 1022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3	도봉국민체육센터	구미시 도량동 92	

[별표 2]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제12조 관련)

1. 들성생활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가 필라테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배드민턴	2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3,000
	자유(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농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배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 다목적체육관 전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목적	평 일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체육 행사	100,000	-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체육 행사 외	150,000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영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

※ 야간사용은 18:00 이후

※ 주간사용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조명	4시간 사용	40,000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기		40,000	

2. 강동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 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 가 필 라 테 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도봉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회 원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스쿼시장	1시간	성 인	5,000	7,000
		청소년, 군인	4,000	6,000
		어린이, 노인	3,500	5,500
	월(자유)	성 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5,000	55,000
	월(강습)	성 인	70,000	80,000
		청소년, 군인	60,000	70,000
		어린이, 노인	55,000	65,000
다목적 체육관 (배구장)	2시간	성 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1,800
	월회원(자유)	성 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40,000
		어린이, 노인	26,000	36,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전용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목적	평 일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체육 행사	60,000	-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체육 행사 외	90,000	
스쿼시장(1면당)		25,000	

-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영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
 ※ 야간사용은 18:00 이후
 ※ 주간사용 4시간 초과 사용 때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냉·난방기	4시간	40,000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요율(제12조의3관련)

구분	관 련 근 거	요 율	비고
면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 제	
감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만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 및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활동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가임기 여성)	100분의 10	

※ 감면율은 월회원에 적용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하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체육센터 개관을 통해 체육진흥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 197호, 2022.1.7)에 따라 보조인력 운영 관련 비용은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기본으로 한다.

나. 체육센터 3개소 준공예정일이 2023년 중이므로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1,210,641	1,210,641	1,210,641	1,210,641	4,842,564
	소계(a)	-	1,210,641	1,210,641	1,210,641	1,210,641	4,842,564
세출	노무비	2,381,157	2,452,592	2,526,169	2,601,955	2,680,013	12,641,886
	경비	1,468,752	1,512,815	1,558,199	1,604,945	1,653,093	7,797,804
	일반관리비	230,995	237,925	245,063	252,414	259,987	1,226,384
	부가세	408,090	420,333	432,943	445,931	459,309	2,166,606
	소계(b)	4,488,994 (1,122,248)	4,623,664	4,762,374	4,905,245	5,052,402	23,832,679
합계(a-b)		△1,122,248	△3,413,023	△3,551,733	△3,694,604	△3,841,761	△15,623,36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세출)	1,122,248	3,413,023	3,551,733	3,694,604	3,841,761	15,623,369

☞ 1차년도 : 3개월분 적용 / 2차년도 이후 연간운영비에 물가상승률 3%반영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운영팀 이재명(4915)

II. 비용추계 요약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총 액		
노 무 비	2,381,157	○ 들성생활체육센터 : 1,025,433,384원 ○ 강동국민체육센터 : 956,435,124원 ○ 도봉국민체육센터 : 399,288,480원
경 비	1,468,752	○ 들성생활체육센터 : 627,781,769원 ○ 강동국민체육센터 : 609,405,615원 ○ 도봉국민체육센터 : 231,564,634원
일반관리비	230,994	○ 노무비 + 경비의 6%
부 가 세	408,090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0%

Ⅲ.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고아(들성)생활체육센터

• 인력산정표

부서 및 담당		적용등급	인력	인건비 (원/년)	합계 (원/년)	비고
관 리 운 영	관리운영팀장	6급 18호봉	1	62,986,260	62,986,260	정규직
	행정사무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건축	7급 12호봉	1	45,953,376	45,953,376	정규직
	기계	7급 12호봉	1	45,953,376	45,953,376	정규직
	소방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전기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헬스강사	1호봉	2	31,083,624	62,167,248	공무직
	수영강사	1호봉	10	31,083,624	310,836,240	공무직
수 영 장	안내원	1호봉	3	30,667,376	92,032,128	공무직
기 타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7	30,256,728	211,797,096	기간제
연간 인건비 합계			30		1,025,433,384	

• 연간 운영비

비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인 건 비	1,025,433,384	
	소 계	1,025,433,384	
경비	보 험 료	106,044,580	
	복 리 후 생 비	11,168,890	
	수 도 광 열 비	70,590,676	
	전 력 비	144,441,000	
	연 료 비	162,000,000	
	수 리 수 선 비	86,042,702	
	소 모 품 비	30,002,547	
	지 급 수 수 료	17,581,824	
	소 계	627,781,769	
순 운영비		1,653,305,602	
일반관리비(6%)		99,198,336	순 운영비의 6%
운영비 합계		1,752,503,938	
부가가치세(10%)		175,250,393	운영비 합계의 10%
연간 운영 비용		1,927,754,331	운영비 합계 + 부가가치세

2. 구미(강동)국민체육센터

• 인력산정표

부서 및 담당		적용등급	인력	인건비 (원/년)	합계	비고
관 리 운 영	관리운영팀장	6급 18호봉	1	62,986,260	62,986,260	정규직
	행정사무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건축	7급 12호봉	1	45,953,376	45,953,376	정규직
	기계	7급 12호봉	1	45,953,376	45,953,376	정규직
	소방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전기	8급 9호봉	1	38,741,532	38,741,532	정규직
	헬스강사	1호봉	2	31,083,624	62,167,248	공무직
수 영 장	수영강사	1호봉	10	31,083,624	310,836,240	공무직
	안내원	1호봉	3	30,677,376	92,032,128	공무직
기 타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6	30,256,728	181,540,368	기간제
연간 인건비 합계			28		956,435,124	

• 연간 운영비

비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인 건 비	956,435,124	
	소 계	956,435,124	
경비	보 험 료	98,101,817	
	복 리 후 생 비	10,509,800	
	수 도 광 열 비	65,840,846	
	전 력 비	144,441,000	
	연 료 비	162,000,000	
	수 리 수 선 비	80,253,153	
	소 모 품 비	29,620,563	
	지 급 수 수 료	17,581,824	
	소 계	609,405,615	
순 운영비		1,564,784,127	
일반관리비(6%)		93,887,047	순 운영비의 6%
운영비 합계		1,658,671,174	
부가가치세(10%)		165,867,117	운영비 합계의 10%
연간 운영 비용		1,824,538,291	운영비 합계 + 부가가치세

3. 도봉국민체육센터

• 인력산정표

부서 및 담당		적용등급	인력	인건비 (원/년)	합계	비고
관 리 운 영	팀장	6급 13호봉	1	56,720,904	56,720,904	정규직
	행정 사무	8급 3호봉	1	32,068,848	32,068,848	정규직
		8급 3호봉	1	32,068,848	32,068,848	정규직
	시설 안전 관리	8급 3호봉	1	32,068,848	32,068,848	정규직
	스쿼시장 안전 관리	8급 3호봉	1	32,068,848	32,068,848	정규직
스 쿼 시 장	스쿼시강사	1호봉	2	31,083,624	62,167,248	공무직
	안내원	1호봉	2	30,677,376	61,354,752	공무직
기 타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3	30,256,728	90,770,184	기간제
연간 인건비 합계			12		399,288,480	

• 연간 운영비

비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인 건 비	388,298,376	
	소 계	388,298,376	
경비	보 험 료	41,289,984	
	복 리 후 생 비	3,169,448	
	수 도 광 열 비	27,486,957	
	전 력 비	43,332,300	
	연 료 비	48,600,000	
	수 리 수 선 비	33,503,746	
	소 모 품 비	18,018,557	
	지 급 수 수 료	16,163,642	
	소 계	231,564,634	
순 운영비		630,853,114	
일반관리비(6%)		37,851,186	순 운영비의 6%
운영비 합계		668,704,300	
부가가치세(10%)		66,870,430	운영비 합계의 10%
연간 운영 비용		735,574,730	운영비 합계 + 부가가치세

4. 세입산출

• 들성생활체육센터

구 분		연간 이용인원(명)	수입금(천원)	비 고
수영장	월	7,895	331,462	
	일	20,031	59,348	
헬스장	월	2,460	74,844	
GX실	월	1,729	56,554	
다목적 체육관	일	4,149	11,320	
	월	616	35,289	
	대관	2,800	3,936	
합계			572,753	

• 강동국민체육센터

구 분		연간 이용인원(명)	수입금(천원)	비 고
수영장	월	7,895	331,462	
	일	20,031	59,348	
헬스장	월	2,460	74,844	
GX실	월	1,729	56,554	
합계			522,208	

• 도봉국민체육센터

구 분		연간 이용인원(명)	수입금(천원)	비 고
스쿼시	강습	1,263	88,410	
	일	1,822	9,110	
다목적 체육관	일	1,383	3,773	감조정
	월	205	11,763	
	대관	2,800	2,624	
합계		7,473	115,680	

※ 올림픽기념생활관, 남사스포츠센터(경기도) 이용인원 참고

※ 산출기준

○ 인건비

구 분		내 용
직접인건비	정 의	제조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수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적용대상	관리운영팀장, 시설운영, 시설관리, 강사, 안내원
	산정기준	2023년 구미시설공단 보수규정

※ 환경미화원(실버직)은 최저임금 적용

○ 경비산정

• 보험료

구 분	산정 기준	요 율	내 용	근 거
국민연금	표준보수년액	4.5%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표준보수년액	3.545%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표준보수년액	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표준보수년액	1.75%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보험	표준보수년액	0.06%		임금채권보장법

• 복리후생비

구분	단위	단가	비고
건강검진비	식	331,818	1인 1회 기준
근무복(동계)	식	72,727	연간 1회 지급 기준
근무복(하계)	식	90,909	연간 1회 지급 기준
안전모	식	3,818	연간 1회 지급 기준
안전화	식	41,363	연간 1회 지급 기준
강사 근무복	식	60,000	연간 1회 지급 기준
수영슈트	식	363,636	연간 1회 지급 기준
적용기준	1. 근무복, 수영슈트는 공단 예산계획 기준 적용 2. 건강검진비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3. 안전모, 안전화, 강사근무복은 한국물가정보 단가 기준 적용 4.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는 운영상황에 따른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통계적 기법인 노무비법에 의해 배부율을 산정하여 계상

구분	금액	배부율
직접인건비	연간 보수액 총액	
수도광열비	연간 보수액 총액 * 6.88%	6.88%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수리수선비**

- 수리수선비는 운영상황에 따른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통계적 기법인 노무비법에 의해 배부율을 산정하여 계상

구분	금액	배부율
직접인건비	연간 보수액 총액	
수도광열비	연간 보수액 총액 * 8.39%	8.39%

- **전력비, 연료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 올림픽기념생활관 예산서 참고

-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6%를 적용

※ 시설공단 봉급표

계급 호봉	이사장	상임이사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1	3,980,500	3,540,100	3,310,000	3,075,500	2,440,100	2,188,200	1,955,800	1,898,000	1,825,700
2	4,124,300	3,675,800	3,437,800	3,194,600	2,603,500	2,287,500	2,050,300	1,968,100	1,872,300
3	4,272,900	3,814,100	3,568,500	3,318,000	2,719,800	2,443,600	2,151,200	2,038,200	1,918,900
4	4,422,500	3,955,200	3,704,000	3,446,400	2,839,500	2,554,800	2,303,500	2,108,300	1,965,500
5	4,575,000	4,098,900	3,842,000	3,578,800	2,963,000	2,669,700	2,410,400	2,198,900	2,012,100
6	4,729,800	4,244,700	3,992,700	3,724,600	3,088,700	2,787,700	2,518,900	2,291,700	2,105,600
7	4,886,400	4,391,600	4,128,200	3,858,100	3,223,400	2,904,800	2,627,400	2,388,700	2,193,100
8	5,043,200	4,540,000	4,280,100	3,998,400	3,350,800	3,035,100	2,733,000	2,484,600	2,279,700
9	5,202,600	4,689,100	4,416,900	4,135,400	3,479,800	3,149,700	2,844,500	2,577,700	2,363,200
10	5,361,600	4,839,000	4,562,700	4,276,300	3,601,400	3,259,600	2,941,600	2,677,900	2,443,900
11	5,522,300	4,989,500	4,720,100	4,425,600	3,713,100	3,360,000	3,032,100	2,760,900	2,531,200
12	5,682,700	5,128,300	4,852,000	4,550,100	3,844,400	3,459,600	3,117,900	2,843,400	2,607,500
13	5,832,400	5,257,500	4,975,800	4,668,700	3,948,000	3,575,200	3,203,100	2,922,700	2,682,500
14	5,972,100	5,378,800	5,091,200	4,778,800	4,043,600	3,665,900	3,305,800	3,000,500	2,755,400
15	6,100,400	5,493,600	5,195,900	4,877,800	4,133,700	3,748,300	3,381,400	3,091,600	2,822,300
16	6,221,100	5,601,200	5,329,500	5,007,700	4,222,100	3,830,800	3,457,300	3,161,000	2,909,800
17	6,333,000	5,701,500	5,426,300	5,100,700	4,337,800	3,909,600	3,529,100	3,230,800	2,974,600
18	6,437,400	5,795,400	5,517,300	5,188,700	4,418,500	4,011,500	3,597,600	3,296,900	3,037,600
19	6,534,800	5,883,800	5,602,200	5,271,600	4,494,500	4,082,500	3,694,300	3,360,600	3,097,900
20	6,624,800	5,966,000	5,682,800	5,349,000	4,566,200	4,151,200	3,757,800	3,453,000	3,154,300
21	6,709,500	6,044,200	5,772,400	5,437,300	4,630,900	4,211,600	3,815,200	3,509,000	3,237,400
22	6,788,000	6,116,700	5,843,200	5,506,800	4,716,300	4,273,300	3,873,500	3,562,800	3,291,000
23	6,860,800	6,184,900	5,907,200	5,568,900	4,776,000	4,350,300	3,927,100	3,614,800	3,340,600
24	6,928,600	6,249,300	5,970,300	5,630,300	4,834,700	4,407,200	4,001,300	3,665,600	3,389,400
25	6,992,300	6,308,900	6,029,200	5,688,500	4,890,900	4,461,000	4,048,500	3,735,300	3,436,900
26	7,051,200	6,365,600	6,084,600	5,742,900	4,943,600	4,512,300	4,097,500	3,779,500	3,502,000
27		6,417,400	6,135,800	5,794,600	4,993,900	4,561,400	4,144,700	3,822,300	3,543,900
28		6,467,400	6,185,400	5,844,000	5,041,500	4,607,700	4,190,300	3,864,200	3,584,700
29				5,888,800	5,085,900	4,652,000	4,233,200	3,905,100	3,625,100
30				5,933,100	5,130,200	4,694,500	4,274,700	3,944,500	3,663,300
31					5,171,000	4,735,400	4,314,700	3,982,500	3,702,200
32					5,210,100				

소 관 부 서		체육시설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추 상 익
	팀 장	김 래 연
	담 당 자	이 재 명 (480-4915)